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대전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명수  
전화 042-470-4041 / 팩스 042-470-4240

# 보도자료

2021. 1. 4.(월)

## 제 목

# 재심사유 작출목적 거짓 위증 자수 사건 수사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0조 제3항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### ● 대전지검은

-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‘위증했다’고 거짓 자수 하게 한 A○○과 A○○의 어머니 B○○를 기소중지하고
- 이를 도운 법무사 C○○와 거짓 위증 자수자 7명 등 8명을 구속 기소, 위증 자수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● 이후에도 위증, 무고 등 사법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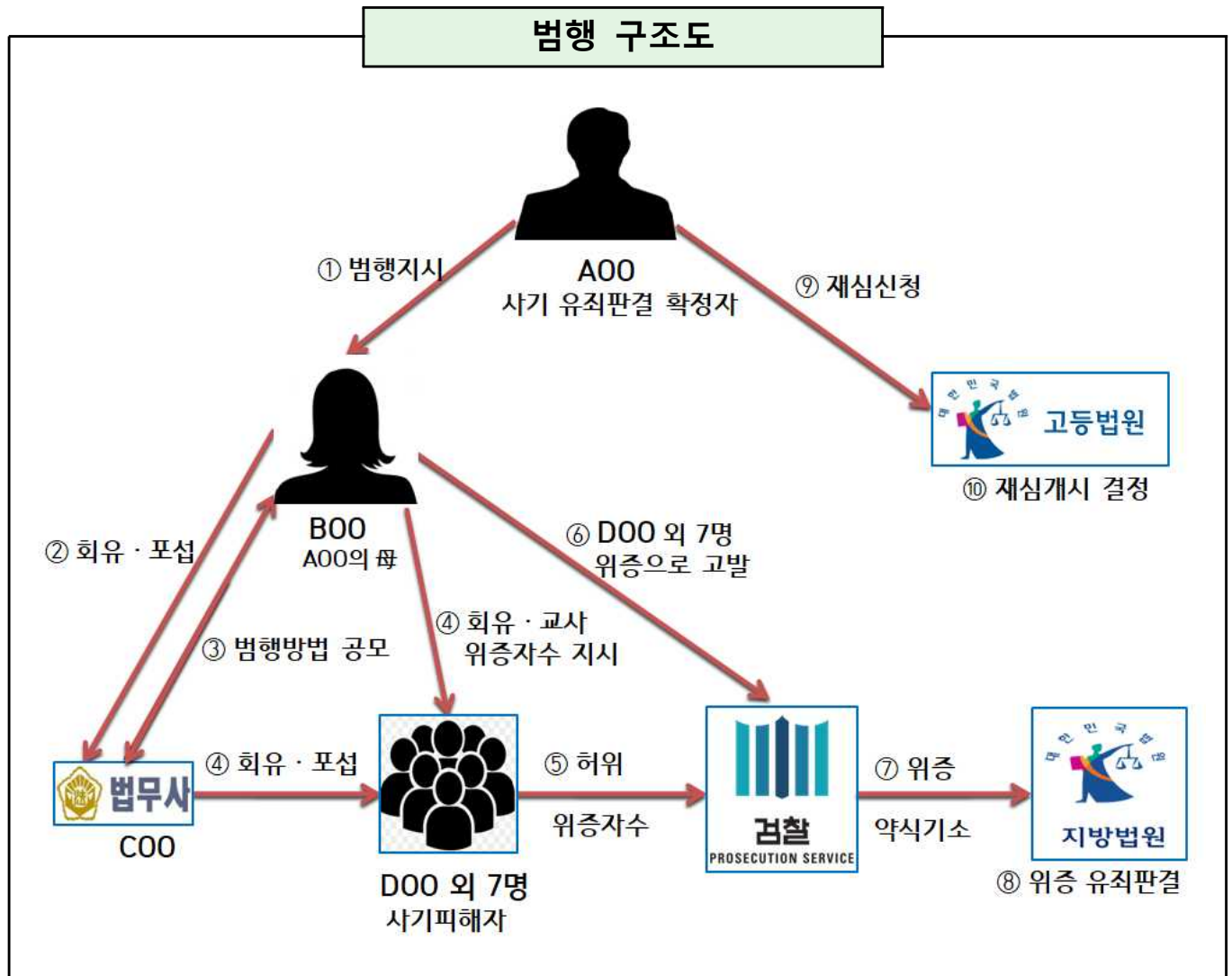
※ 대전지검은 2020. 12. 3. “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수사” 제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

## ① 피고인 및 피의자

- A○○ : IT업체 前 대표, 범행 계획·지시
- B○○ : A○○의 母, 범행방법 공모, 피해자 회유·교사
- C○○ : 법무사, 범행방법 공모, 피해자 회유·포섭
- D○○ 외 7명 : 사기 피해자 겸 거짓 위증 자수자

## ② 공소사실 및 피의사실 요지

- (A○○, B○○, C○○) 벌금대납,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D○○의 7명 으로 하여금 '19. 2. 'A○○의 사기 사건에서 A○○이 진범이라고 허위로 증언했다'며 거짓 자수하게 한 후 이들을 고발하여 위증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를 근거로 사기 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받음 [위계공무집행 방해, 무고, 범인도피(교사)]
- (D○○ 외 7명) 사기 피해금을 변제받고 A○○에 대한 고소를 취소 하였는데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A○○의 유죄가 확정되자 위증죄 벌금대납과 추가적인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'19. 2. 거짓 위증 자수함 [위계공무집행방해, 무고방조, 범인도피]



### ③ 주요 수사 경과

- '20. 7. 7. 대전지검, B○○에 대한 고발장 접수
- '20. 10. ~ 12. A○○ 외 9명 인지, 8명 구속 기소, 1명 불구속 기소
- '21. 1. 4. A○○, B○○ 수배 후 기소중지

### ④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확정된 사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,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한 사실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냄
- 검찰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또한, 위증, 무고 등 사법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